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4

발의연월일: 2020. 7. 8.

발 의 자: 박홍근・양이원영・조오섭

양정숙 • 양기대 • 박성준

김경만 • 박영순 • 홍성국

홍익표 • 윤미향 • 김용민

남인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의 정관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기업 등의 법인이나 단체를 열거하 면서 그 소속 임직원 등이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여러 자격자 중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분야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져야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제회는 특정한 법인이나 기관이 과학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단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률전문가 또는 자체 운영 중인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자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관에 근거하는 회원자격심의기구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격상하여 회원자격 판정기준 정립, 회원자격 보유여부 판정 등 회원자격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자격심사업무의 법적 정당성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최초"를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초"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회원자격심사위원회)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6조의 회원자격 판정기준 정립에 관한 사항
- 2.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6조의 회원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파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이 회 원자격과 관련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이내
- 2. 공제회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이내
- 3. 과학기술 분야 또는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자격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2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부 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원의 자격) ① ~ ③ (생	제6조(회원의 자격) ① ~ ③ (현
략)	행과 같음)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	4
신청서를 제출하고 <u>최초</u> 의 부	<u>제6조의2제</u>
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1항에 따른 회원자격심사위원회
회원이 된다.	의 심사를 거쳐 최초
	<u>.</u>
<u><신 설></u>	제6조의2(회원자격심사위원회)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심사
	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
	<u>다)를 둔다.</u>
	1. 제6조의 회원자격 판정기준
	정립에 관한 사항
	2.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6조의 회원자격을
	<u>갖추고 있는지 여부 판정에</u>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
	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
	다)이 회원자격과 관련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 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사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 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이 된다.
- 1. 대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 명하는 사람: 3명 이내
- 2. 공제회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이내
- 3. 과학기술 분야 또는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

제회 임직원 중에서 심사위원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정관으로 정한다.